

國際電氣技術會議에 參加하고서

李 承 院

(서울大學校工大 電氣科教授)

筆者는 濱洲 시드니大學에서 79年 5月 21日부터 6月 2日까지 12月間에 걸쳐 開催된 제 44 차 I. E. C 총회에 大韓電氣協會會員의 資格으로 參席하였다.
또 I. E. C 韓國委員會委員을 맡고 있는 關係로 해서 理事會에도 參席할 수 있었으며, 또 工振廳의 指定에 의하여 用言專門委員會(TCI)와 電壓專門委員會(TC 8)에도 參席한 바 있었으므로 이에 關하여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I. E. C

(1) 개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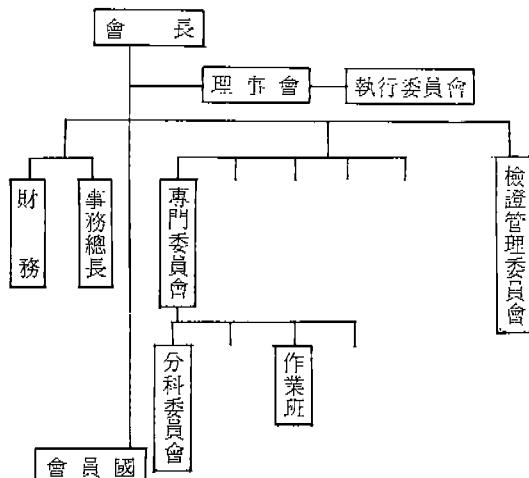
I. E. 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을 頭文字로 表示한 것으로서 우리말로는 國際電氣技術委員會라고 稱한다. 이 委員會는 1908년 10월에 電氣電子技術分野의 國際的 規格을 制定 普及함을 主目的으로 組織되었는데 副隨的으로 이 分野에 있어서의 國際協力 및 理解促進을 圖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工業은 1960年 以來 급속성장을 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輸出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輸出을 위해서는 국제표준규격에 맞는 製品을 生產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각 국이 저마다 제시하는 까다로운 製品規格障壁에 부딪치게 된다. 그래서 政府는 1963年 I. S. O와 I. E. C에 加入하게 되었고, 이 規格을 輸出品에 適用시킬 뿐 아니라 輸出品과 国내부품의 規格을 一元化하여 生產性을 높이기 위해 國

內標準規格에 錢극적으로 導入하고 있는 것이다.

(2) I. E. C의 組織

I. E. C의 조직은 [표 1]과 같으며 회원국은 각기 국내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회가 각국을 대표하는 會員機構가 되며, 이것을 National Committee라고 한다. 예를 들어 韓國은 韓國



= 特別寄稿 =

I. E. C 委員會가 (Korea National Committee of the I. E. C) 韓國을 代表하는 I. E. C 會員인 것이다.

現在 I. E. C 會員國의 總數는 今年에 加入한 東獨, 뉴질랜드를 합해서 44개국이며, 그 國名은 [표 2]와 같으며, 그 組織에 따른 機能은 다음과 같다.

(表 2) 회원국 (79년 5월 현재 44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중공, 쿠바, 체코, 랜마크, 이집트, 페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한국, 북괴,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소련, 영국, 미국, 베네수엘라, 유고, 동독, 뉴질랜드

① 理事會 (Council)

이사회는 會長 및 회원국 회장으로構成되어며, 副會長, 前任會長, 財務官, 事務總長이 投票權 없이 參席한다. 理事會는 I. E. C 最高決議機關으로서 적어도 연 1회 開催되며, I. E. C 會長 또는 4개 회원국회장의 要請으로開催할 수 있다.

각 회원국회장은 會議에 3명 이내의 專門家를 隨行할 수 있다. 또 회장은 회원국의 要請이나 自己裁量으로 업저버를 招請할 수가 있다. 이 경우 會長은 會議開催前 2개월 이내에 招請狀을 發送해야 한다. 會議의 正足數는 過半數이고 議決은 參席理事過半數의 賛成에 의하여야 이루어진다.

I. E. C 理事會의 主要業務는 다음과 같다.

- 가) 年例報告書 接收
- 나) 會員資格 關連事項
- 다) 職員選任
- 라) I. E. C 執行委員會 會員國 選出

마) 定款(Statutes), 시행규칙(Rules of procedure) 및 I. E. C 作業指針(General Directives for the work of the I. E. C)의 改正, 기타 重要하다고 認定된다고 생 각되는 사항.

바) 會員國 分擔金 決定

사) 豫算承認

아) 執行委員會 密議結果의 最終決定

자) 中央事務局 機構 및 職員關連事項

② 執行委員會

I. E. C 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새로운 전문위원회의 창설, I. E. C 對內調整, 一般技術的 問題, TC의 議長 및 幹事任命 등을 行하기 위해서 執行委員會를 두고 있다. 물론 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은 理事會의 最終結定을 보아야 한다. 執行委員會는 12개 회원국 대표로構成되는데 그의 任期는 6年이고 每 2年마다 1/3씩 改選되며, 임기 만료 회원국은 임기 만료 직후의 重任이 許容되지 않는다.

執行委員會의 議決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 각 회원국 대표는 1人の專門家를 帶同할 수 있으며, I. E. C 會長은 會員國의 要請이나 自己裁量으로 Observer를 招請할 수 있다. 이 경우의 招請은 회의 개최 2개월전에 행해야 한다. 또한 I. E. C 執行委員會에는 安全諮詢委員會(ACOS ; Advisory Committee on Safety) 및 電子 및 電氣通信諮詢委員會(ACE T ; Advisory Committee on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두 專門機構가 設立되어 각각 關連活動을 하고 있다.

③ 會長 (President)

회원국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후보자 중에서 理事會가 會長을 選出한다. 會長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主裁하며, 會長의 權限을 副會長 또는 直前會長에게 委任할 수도 있다. 그리고 會長은 任期滿了 直後의 重任은 許容되지 않는다.

④ 副會長(Vice-president)

회원국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후보중에서 理事會가 副會長을 選出하며 그 任期는 3年이고 定員은 3명 이내이다.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회장을 代理한다.

⑤ 財務官(Treasurer)

會員國으로부터 推薦이 있는 후보 중에서 理事會에서 選出하며 그 任期는 3年이고 1次에 한해서 重任할 수 있다. 財務官은 財政業務에 관해서 中央事務局을 指導하고 事務總長이 樹立한 事業에 따라 豫算案을 作成하여 年 1回 會計監查를 하고 그 結果를 理事會에 報告한다. 財務官 有故時에는 事務總長이 그 業務를 代行한다.

⑥ 中央事務局

事務總長下에 事務局을 두고 會務一切을 管理執行한다.

⑦ 事務總長(General Secretary)

理事會에 의하여 임명되며, 事務局을 總轄하고 理事會 및 執行委員會의 指示에 따라 會務를 執行한다. 事務總長은 決議權 없이 모든 會議에 參席할 수 있다.

2. 專門委員會(T. C)

① 전문위원회의 창설

회원국의 提案에 따라 전 회원국 1/3 以上의 同意를 얻은 후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理事會의 承認을 得하여 專門委員이 創設된다. 전문위원회는 委任 받은 作業을 위하여 分과위원회(S. C)를 設立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기 필요에 따라 作業班(W. G)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작업반에는 그 성격에 따라 臨時作業班과豫備作業班 두 種이 있다.

現在 I. E. C에는 79個의 TC가 있으며, 그 중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TC는 뒤의 [표 3]과 같다.

② 名稱及範圍

TC의 作業 범위는 TC에서 起案하고, 執行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確定되어 SC, WG의 作業 범위는 TC 또는 SC에서 附與된다.

③ 會員加入

TC 또는 SC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회원국 대표이면 이에 참석할 수 있다.

④ 幹事及議長

TC의 간사는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가운데서 임명하고 SC의 간사는 母體 TC가 회원국 가운데서 임명하며 TC의 議長은 TC 간사의 指命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임명하며, SC 議長은 SC 간사의 지명에 따라 次體 TC가 任命한다.

⑤ 會議召集

TC 및 SC의 議長 및 幹事が 회의를 召集하기로 합의하면 6개월 이전에 중앙사무국에 會議召集申請을 하면 中央事務局은 이를 검토, 회의 일자와 장소를 간사와 협의 결정한다. 이 경우 I. E. C총회(I. E. C General Meeting)期間中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을 경우는 총회기간의 전후 2개월 내에는 開催할 수 없다.

⑥ 案件作成

會議案件은 간사가 作成하여 會議開催 5개월 전에 중앙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또 회의 개최 시까지 가급적 많은 회원국意見과 幹事 意見을 収集하여 會議開催時 配布한다.

⑦ 言語

I. E. C의 公式言語는 英語, 佛語, 露語이며 露語의 경우에는 소련이 번역과 통역을 담당한다.

⑧ 會議錄

幹事는 회의록 초안을 作成, 議長의 承認을 得한 後 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원국에의 配布를 위하여 中央事務局에 提出해야 한다. 중앙사무국은 회원국의 承認을 得하기 위하여 6개월 규정(6 months Rule) 또는 2개월 절차(2 months procedure)에 회부해야 한다.

⑨ 技術作業

① 용 어

(1) 6 개월 규정(6 months Rule)

TC 또는 SC에서 심의한 결과가 I. E. C. 규격으로서 充分하다고 認定되면 6 개월 동안 각국의 의견을 조회하는데, 이 절차를 6 개월 规定이라고 한다. 이 6 개월 규정에도 2 가지 절차가 있다.

그 첫째는 해당 TC 또는 SC에서 간사가 작성한 초안(Secretariat Draft)을 회원국에 돌려 의견을 청취한 후 最終案을 회의에 회부하는 定式節次(Normal procedure)와, 둘째는 해당 TC의 회의에서 충분히 원만한 同意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 수정된 간사초안의 配布 없이 바로 회부하는 속성절차(Accelerated procedure)의 두가지가 있는데, 회원국 1/5의 반대가 없으면 I. E. C 规格書(I. E. C publication)로 출판된다.

(2) 2 개월 節次(2 months procedure)

6 개월 규정에 회부되어 所要의 同意는 얻었으나 수정意见이 接受되었을 때 그 意見에 동의하는 국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전되면 해당 TC의 議長決定으로 2 개월의 기간을 두어 회원국의 의견을 再調整하는 節次를 말하며, 이 경우 配布하는 案은 原案을 그대로 하느냐 修正한 案을 配布할 것인가는 해당 TC의 議長이 決定한다.

② 작업단계

(1) 제 1 단계

TC나 SC의 幹事が 各國으로부터 情報를 収集, 草案을 作成한 다음 회원국들에 對한 意見照會를 위해 接收마감일자를 명시하여 中央事務局으로 보낸다.

(2) 제 2 단계

중앙사무국에서 上記草案을 회원국에 配布하면 회원국들은 그 규격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앙사무국에 제출한다. 중앙사무국은 그 意見

書를 幹事와 全會員局에 送付한다. 이에 對한 會員國의 意見書는 文書發送要領書(Document Dispatch Advice Note)에 記入되어 있는 日字 까지 中央事務局으로 보내야 한다.

(3) 제 3 단계

TC 또는 SC에서 이상의 節次에 의해서 I. E. C 规格으로서 充分하다고 認定될 것 같으면 그 사정을 집행위원회에게 通報하고 편집위원회의 協助를 받아 英·佛文으로 作成한 다음 中央事務局에서 회원들의 意見書와 함께 回信할 투표用紙를 첨부하여 6 개월 规定에 따른 承認을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다시 配布한다.

(4) 제 4 단계

회원국은 配布된 案에 反對할 경우는 그 意見을 明確히 해야 한다. 賛成時에도 意見을 첨부할 수 있다. 또 根本的인 理由로 반대 투표를 한 회원국은 해당 규격안이 확정되는 公式節次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대 투표에 대한 討意를 하도록 TC 議長에게 要請할 수 있으며, 自國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반대 투표한 회원국은 그 이유를 TC 議長과 事務局에 提出하면 이들은 그 事項을 规格書의 序文에 插入할 수 있다.

(5) 제 5 단계

규격서가 승인을 얻었으나 근본적인 중요 의견서가 接受되었을 경우에는 TC의 議長은 TC 또는 SC에 回送하여 재토의를 할 수 있다. 中央事務局에서는 해당 TC의 幹事 및 議長과 함께 투표 결과, 접수된 의견서, 의견서에 대한 幹事의 見解 및 TC 議長의 決定事項을 包含한 投票結果 報告書를 配布해야 한다.

(6) 제 6 단계

TC의 議長이 6 개월 규정하에 승인을 얻었으나, 修正된 规格案을 찬성할 회원국이 증가될 것으로 간주되면 2 개월 절차에 따라 회원국의 意見을 再照會한다.

(7) 제 7 단계

幹事が 승인된 최종안을 중앙사무국에 보내어

出版하도록 하는데 規格書의 名稱 및 序文은 幹事會와 中央事務局이 協議하여 決定한다.

② 규격의 개정 및 폐지

I. E. C 규격의 개정은 製定節次와 同一하며, 규격의 폐지는 TC 또는 SC의 회의를 거쳐 중앙사무국에서 2개월의 기간을 두어 회원국의 意見을 照會한 後 TC에서 決定한다.

③ 文書番號

(1) 作業文書(Working Document)

作業文書의 種類에는 規格草案(Draft), 회원국意見書(Comment), 최종規格案(Final Draft)의 3種이 있으며, 文書番號의 부여를 例를 들어 說明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例 1] Document 20(France) 21

IEC/TC 20(Electric Cables)에서 France가 작성한 作業文書 21을 뜻한다.

[例 2] Document 2 (Secretariat) 23

IEC/TC 2(Rotating Machinery)의 幹事が 작성한 作業文書 23番을 뜻한다.

[例 3] Document 14(Central office) 17

중앙사무국에서 作成한 IEC/TC 14(Power Transformers)에 關한 17番 文書

(2) 會議文書(Meeting Document)

[例 1] 12(Paris/Secretariat) 2

Paris에서 개최된 IEL/TC 12(Radio Communication) 회의문서 2 번으로서 幹事が 作成

하였음을 뜻함.

[例 2] 29 B(Hague/U. S. A) 24

Hague에서 개최된 IEL/TC 29(Electro-acoustics) 산하 SC 29 B(Audio Engineering) 회의문서 24 번으로서 美國이 작성하였음을 뜻한다.

(3) 會議錄(Minutes)

[例 1] RM 392/TC 32

IEL/TC 32(Fuses)의 會議錄 392番을 뜻하는데, RM은 Record of Meeting을 뜻한다.

[表 3] 우리나라의 중점활동 TC 현황

NO	명 칭	간사
2	Rotating Machinery(회전기)	영 국
7	Bare aluminum conductors(알미늄 도체)	캐나다
12	Radio communication(무선통신)	화 란
14	Power transformers(전력변압기)	영 국
20	Electric cables(전선)	영 국
29	Electro-acoustics(전기음향)	화 란
46	Cables, wires and waveguides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미 국
57	Power line carrier systems and tele control equipment(전력搬送方式 및 遠隔調節裝置)	독 일
59	Performance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가정용전기기기의 성능)	프랑스
61	Safety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가정용전기기기의 안정성)	미 국

위의 〈I. E. C 參加記〉는 紙面관계상 「44次 I. E. C 總會結果」와 「專門委員會(TC 1, TC 8) 結果報告」 및 「結論」은 다음 9月號에 게재할 것을 밝힙니다.